

드림팰리스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정원- 147명

▶ 입소대상

시설의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시설급여를 인정받았거나 기타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으로 한다.

▶ 입소절차

- ① 초기면접 :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등은 초기 면접 시 노인과 그 가족을 면담하여 노인의 건강 상태를 점검 한다. 특히 치매와 일상생활기능 정도를 평가 하여 입소여부를 판정한다.
- ② 입소계약 : 입소가 결정된 노인은 시설장과 신원인수인에 의한 입소 계약을 체결한다.
- ③ 입소 및 생활안내 : 입소자의 권리·의무와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입소 생활에 대해 안내한다.

▶ 입소비용 (2025년 기준/30일기준/4인실기준)

등급	등급비용	본인부담(일반기준)	식대	총계
1	90,450	542,700	396,000	938,700
2	83,910	503,460	396,000	899,460
3~5	79,240	475,440	396,000	871,440

※ 일반 : 본인부담금 20% + 비급여본인부담(식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 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 12% 또는 8% + 비급여본인부담(식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적용됩니다.

※ 계약의사 초진시 3,680원, 재진시 2,630 원 / 계약의사 진료는 매월 2회

▶ 계약의 목적

-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 ③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 계약기간

- ①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 ③ 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재계약) 된다.(단, 시설 정원이나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 ④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반영한다.

▶ 계약해지

-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 ②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 ③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퇴소 처리한다.
- ④ 시설장은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만료일 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입소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4. 이용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시설장은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5. 입소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시에 따라 당연 계약 해지 된다.
- ⑤.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 이용료

-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 ④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 ⑤ 이용료 변경시 보호자에게 서면 안내 또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안내한다.

▶이용료의 납부방법

- ① 이용자의 입소 당월 이용료는 이용자의 입소가 확정될 때에는 입소 일로부터 말일까지의 입소비용 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입소비용을 시설은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익월(다음달) 10일까지 전월의 이용료를 납부(입금)하여야 한다.
- ②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 ④ 이용료 납부는 시설의 수납 지정계좌 입금 또는 신용카드로 할 수 있다.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없이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입소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때
 2.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3.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 입소자의 건강보험 자격이 변경되었을 때
- ② 급여비용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제공시간 및 횟수는 입소자(보호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4. 「장기요양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5. 비급여 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 및 전산을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6. 비급여 비용 변경은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 ① 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한다.
 1. 급식서비스: 기본 1일 3식을 원칙으로 하고, 입소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 적절하며,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 제공해 충분한 영양섭취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에 따라 건강의 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2. 상담서비스: 입소어르신과 그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및 건강에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상담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도움을 준다.
 3. 의료서비스: 입소 어르신에게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상태 체크 및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재활의욕을 고취시킨다.
 4. 신체 재활서비스: 기능회복훈련, 장애에 따른 부위별 치료를 통해 통증완화 및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며 각종 치료 기법을 통한 개인의 잔존 능력향상을 통한 자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한다,
5. 심리 사회재활 서비스: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결여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사회성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6. 여가활동서비스: 다양한 여가활용을 권장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

7. 위생 및 복지후생 서비스: 주 1회 목욕, 매일 개인위생 관리를 통한 입소 어르신들의 청결 유지는 물론 사회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복지후생 서비스이다.

② 비용의 부담 : 급식서비스는 비용 발생하고 그외 서비스는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제공한다.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⑥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원상회복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⑤ 입소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입소비용** (2024년 기준/30일기준/4인실기준)

등급	등급비용	본인부담(일반기준)	식대	총계
1	84,240	505,440	378,000	883,440
2	78,150	468,900	378,000	846,900
3~5	73,800	442,800	378,000	820,800

- ※ 일반 : 본인부담금 20% + 비급여본인부담(식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 ※ 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 12% 또는 8% + 비급여본인부담(식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적용됩니다.
- ※ 계약의사 초진시 3,520원, 재진시 2,510원 청구 / 계약의사 진료는 매월 2회

▶ **입소비용** (2023년 기준/30일기준/4인실기준)

등급	등급비용	본인부담(일반기준)	식대	총계
1	81,750	490,500	354,000	844,500
2	75,840	455,040	354,000	809,040
3~5	71,620	429,720	354,000	783,720

- ※ 일반 : 본인부담금 20% + 비급여본인부담(식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 ※ 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 12% 또는 8% + 비급여본인부담(식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적용됩니다.
- ※ 계약의사 초진시 3,460원, 재진시 2,470원 청구 / 계약의사 진료는 매월 2회

▶ **입소비용** (2022년 기준/30일기준/4인실기준)

등급	등급비용	본인부담(일반기준)	식대	총계
1	78,200	469,200	327,000	796,200
2	72,550	435,300	327,000	762,300
3~5	68,510	411,060	327,000	738,060

- ※ 일반 : 본인부담금 20% + 비급여본인부담(식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 ※ 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 12% 또는 8% + 비급여본인부담(식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적용됩니다.
- ※ 계약의사 초진시 3,390원, 재진시 2,420원 청구 / 계약의사 진료는 매월 2회